

# 호주의 보육 관련 법과 제도

서 문 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 특집 ]

2013년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복지”입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언급되는 ‘주거’, ‘보육’, ‘의료’, ‘교육’에 걸쳐 주요 외국의 법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I. 들어가기

## II. 보육 관련 법

1. 1972년 아동보육법
2. 2010년 국가 교육과 보호 서비스 법
3.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법과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행정)법

## III. 호주의 주요 보육 제도

1. 서비스 유형
2. 보육비용 지원
3. 서비스 평가

## IV. 맺는 말

## I. 들어가기

호주 보육 제도의 특성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소득계층·취업 등 수요자 특성에 근거한 보육비용 차등 지원, 서비스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를 들 수 있다.

보육비용 지원과 평가 등 보육행정 체계와 제도는 매우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규로는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는 1972년 아동보육법(Child Care Act, 1972)이며, 둘째는 2010년 국가 교육과 보호 서비스 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ct, 2010), 셋째는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법(New Tax System(Family Assistance) Act, 1999), 그리고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행정)법(New Tax System(Family Assistance) (Administration) Act, 1999)이다.

연방정부 보육 담당부처는 교육·노동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이다. 2008년에 가족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에서 교육·노동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보육료 등 각종 지원 전달 실무는 국민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의 세 가지 법 체계와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보육제도를 보육서비스 유형, 보육비용 지원, 보육서비스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 보육 관련 법

### 1. 1972년 아동보육법(Child Care Act, 1972)

1972년 아동보육법은 주로 공공보육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먼저 이 법에서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은 아동보육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장소로 규정하고, 이용 아동은 다수가 취학 전 아동으로 평일 8시간, 주 48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보육시설은 비영리 기업, 지방정부, 비영리 조합(trustee) 등이 설치한 비영리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신규로 공공 비영리 보육시설 설치와 장비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capital grant), 또한 순환 보조금(recurrent grant) 제도를 두어서 신규 보육시설 설치 후 개원 이전까지 6주간 개원 준

비를 위하여 고용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sup> 이외 조항으로 비밀 유지 조항을 두어서 허용된 경우에 한한 정보 접근권 보장과 정보 불법 접근 및 유출에 대한 벌칙 등을 명시하고 있고, 보육 관련 연구 및 보육시설 개발 관련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관 자문위원회로 보육 기준위원회(Child Care Standard Committee)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필요 시 장관이 지침(guideline)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2010년 국가 교육과 보호 서비스 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ct, 2010)

2010년에 제정된 이 법의 목적은 운영자 및 서비스 인가, 서비스 운영 내용과 평가 등 아동 교육과 보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적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를 확립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 보호 아동안전,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고, 참여 아동의 교육과 발달 성과를 증진하며, 보호와 교육 질적 수준의 지속적 개선을 증진시키고,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적 체계에서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통합과 공동책임을 확립하고, 질적 수준에 대한 공적 지식과 정보 접근을 개선하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 공유 확립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이 법의 본문은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제2장~제6장이다. 제2장은 하나 이상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자 인가에 관한 것으로 인가 신청, 적합성 평가, 인가 변경, 중지 및 취소, 유고 시 대체 방법 등을 담고 있고, 제3장은 보육·교육서비스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관서비스와 가정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기관서비스에는 종일제 보육, 학교 밖 보육 및 유치원이 포함된다. 제4장은 원장에 관한 규정이다. 원장 자격을 소지한 자만 서비스 제공기관에 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제5장은 보육·교육 서비스 평가와 등급에 관련된 규정으로, 1990년대 초부터 시행해 온 평가 인증제도를 평가제도로 변경하고 그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시켰다. 제6장은 교육과 보호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은 담고 있다. 이외에 모니터링, 위원회, 국가 기관(quality authority, regulatory authority), 정보, 기록, 프라이버시, 경과규정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sup>2)</sup>

하위법령으로는 2010년 국가 교육과 보호 서비스 규칙(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

1) 1997년부터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 제도는 없어지고 부모보조금으로 일원화됨.

2) The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http://deewr.gov.au/national-quality-framework-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tional Law Regulation, 2010)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각종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3.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법(New Tax System(Family Assistance) Act, 1999)과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행정)법 (New Tax System(Family Assistance) (Administration) Act, 1999)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법은 가족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5장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료 지원인 보육급여와 보육조세환급, 가족세액공제, 출생아에 지급하는 아기보너스, 모성예방접종 등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보육급여와 보육조세환급은 교육·노동부 소관 사항이고, 가족공제, 아기보너스, 모성예방접종은 가족서비스부 소관 업무이다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 하위법령은 대체로 결정(determination)으로 고시되는데, 대부분이 보육급여 지원 대상이나 시간 결정 조건에 관한 내용들이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하면, 먼저 2006년 근로 및 근로 관련 요건 결정<sup>3)</sup>에서는 보육료 지원 시간과 관련한 14가지 근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고, 2006년 보육급여-요구조건 활동 결정으로 근로활동으로 간주하는 9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9개 조건은 개업 준비 상태, 구직활동, 경험·기술연마·취업기회가 기대되는 무급 자원 근로, 12개월 이내 부모 휴가, 연가, 병가, 장기휴가, 유급휴가, 자영업자로 아프거나 연가·장기휴가·부모휴가로 간주되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근로를 제안 받거나 취업을 위한 훈련, 교육 기관 등록자는 1주일 간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한편으로 1999년 신조세체계(가족지원)(행정)법은 신조세체계(가족지원)법 집행을 위한 행정사항에 관한 법이다. 가족 세액공제, 아기보너스, 출산 면역수당, 보육급여, 보육조세환급에 대한 지불, 과지급과 청산, 선지급 및 정산, 결정에 대한 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 수집, 비밀유지, 거짓진술 등을 규정하고, 불법 지원에 대한 고용주나 서비스 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와 제공자와 등록 보육자의 의무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3) New Tax System(Family Assistance) (Child Care Benefit - Recognised Work or Work Related Commitments) Determination 2006.

구체적인 사항은 이 법에 근거하여 결정, 규칙으로 고시되는데, 그 내용은 벌칙에 대한 이자, 등록 중단시 보육급여, 관련 서류에 관한 지침 등이다.

### Ⅲ. 호주의 주요 보육 제도

#### 1. 서비스 유형

호주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크게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으로 구분된다. 인가보육은 주 및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 서비스이고, 등록보육은 개인 보육서비스로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는다. 인가보육은 종일제보육(long day care),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방과후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일시보육(occasional care), 가정내보육(in-home care) 등이 있다. 등록보육은 비동거 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이 포함된다. 호주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분되어 있다.

종일제보육은 기관 보육으로, 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취학아동도 이용이 가능하다. 보통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취업 및 근로 상태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게 된다. 호주 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70% 이상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공급된다.

가정보육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적인 보육자가 자신의 집에서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으로, 기관보육과 마찬가지로 취학 아동을 보육하기도 한다. 가정보육 제공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체로 가정보육센터가 일정수의 가정보육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관리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방과 후 보육기관은 주로 4세부터 12세까지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시간 전이나 방과 후, 휴일 등에 실시하는 보육서비스이다. 보통 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학부모 연합회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한다.

가정내보육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서비스이다. 소외지역 거주 아동, 장애아동처럼 집 밖에서 보육받는 것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가정보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내보육센터가 일정한 수의 가정내 보육제공자를 관리한다.

일시보육은 일시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짧은 시간이나 응급상황 시 이용 가능하다. 주로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등록보육은 가족지원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 FAO)에 보육제공자로 등록한 조



부모, 친인척, 친구, 부모 등에 의한 보육을 말한다. 이들 등록보육 제공자는 가정에서만 아니라 보육센터 등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체로 학위를 가진 유치원 교사가 실시한다.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방학기간 중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또는 유치원마다 운영시간, 프로그램, 아동연령 등이 다양하다. 유치원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정규반 이외에도 나이 어린 아동을 위한 준비반(pre-entry)이나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을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도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보육비용은 지원한다.

## 2. 보육비용 지원

호주의 보육비용 지원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산조사에 의거하여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근로, 훈련, 학업 등의 이유로 보육급여 대상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주는 보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 CCR)이다.

### 1) 보육급여

호주는 2000년 7월부터 보육급여제도로 아동보육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모보조금으로 보호자 소득수준에 의해 차등 지원한다.<sup>4)</sup> 보육급여는 시설보육과 개인 등록보육에 모두 지원되며, 지원 비율은 소득, 재산, 취업유무 등에 따라 차등된다. 등록은 부모가 보육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 조부모가 무상으로 보육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보육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호주 주민으로, 현재 호주에 살고 있어야 하고,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급여지원 대상 서비스 이용자이어야 한다. 지원 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주당 24시간까지를 기본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은 취업 등 조건에 따라 50시간까지 보장한다. 24시간 이상 50시간까지 지원 받기 위한 조건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

4) 보육급여는 종전 자산조사를 통해 제공되던 아동보육부조(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를 통합한 것임.

거나 일을 찾고 있는 경우, 혹은 학업이나 연수 중인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발과 관련된 정부 지원(carer allowance, carer payment)을 받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고 소득보장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조부모가 주 보호자인 아동을 위한 특별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2004년부터 50시간 이용 조건을 면제하여 주었다.<sup>5)</sup> 정부의 지원은 시간당 지원 단가가 적용된다. 호주 보육료는 제약이 없고 연령간 차이가 없으나 시설간의 차이는 크다.

보육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 상한선을 두어서 한 자녀 기준으로 연소득 14만 2,426달러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 자녀수, 아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 이용 이유, 보육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 2012~2013년 현재 인가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연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연소득이 4만 1,026달러 이하이면 100%의 최고 비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 연소득 1,000달러 단위로 매우 정교한 지원 비율(partial rate)이 적용되어 14만 2,426달러에 근접하면 최소비율(16.7%)을 지원 받게 된다. 동일 소득에서 자녀수가 증가하면 지원 비율도 증가한다. 조손가족이나 특별한 요구 아동에게는 최대 비율이 적용된다.

최대 지원 수준은 인가보육에 시간당 3.90달러, 1주일에 50시간이면 195달러이고, 등록보육은 시간당 0.652달러, 1주일에 50시간이면 32.60달러이다. 초등학생은 영유아의 85% 수준이 적용된다.

지원수준으로 인가보육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지만 등록보육에는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저소득 인가보육 이용자는 시간당 3.90달러를 모두 지원 받으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지원 금액이 낮아져 최소 지원액은 단가의 16.7%인 시간당 0.652달러가 된다. 그러나 등록보육(registered care)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액인 시간당 0.652달러가 적용된다. 등록보육 지원금이 시설보육의 최소액에 해당된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설보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육급여를 받는 방법은 매월 보육료 감면을 받는 방법과 일단 보육료를 지불한 후 나중에 한꺼번에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매월 감면 받는 경우에도 급여 수준을 부모가 선택하여 연말에 소득과 대비하여 정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부모는 세 가지 보육급여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산출된 보육급여 전체를 보육시설에 지급하게

5) 과거에는 20시간, 21~50시간, 50시간 초과로 구분하였음. 50시간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이나 학업, 연수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을 넘을 경우에 허용하였음.

하고, 그 나머지를 부모가 내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부모가 보육료를 모두 부담한 후에 회계연도 말 이후에 정부로부터 보육급여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최저 수준의 아동보육급여만을 보육시설에 지급하게 하고 그 나머지를 낸 후, 회계연도 말 이후에 나머지 보육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다. 한편 등록자 보육 이용 가정이 보육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난 후 12개월 이내에 가족지원국에 보육급여 신청서와 보육료 지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낸 경우, 1년에 42일까지는 결석을 하였더라도 보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42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받은 보육급여를 반납하여야 하는데, 몇 가지 유예 조건은 있다. 병원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보호자의 휴가로 인한 결석,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 공휴일, 법원이 다른 사람에게 아동의 보호를 명령하였을 경우, 유치원(preschool)에 재학 중인 경우 등에는 42일 이상 결석하여도 보육급여를 지급한다.

〈표 1〉 호주의 보육급여(CCB) 지원 기준: 2012~2013

(단위: 호주 달러)

구 분	시간당 최대	주당 최대(50시간)	소득 상한(한자녀)
인가 보육			
한 자녀	3.90	195.00	142,426
두 자녀	4.07	407.53	147,594
세 자녀	4.23	635.95	166,656
이후 자녀당 가산	4.23	211.98	31,495
등록 보육	\$ 0,652	\$ 32,60	

자료: <http://www.mychild.gov.au/pages/CCFactSheets.aspx>.

## 2) 보육료 환급

한편, 보육료 환급제도는 자녀를 기르면서 일, 훈련 및 공부하는 가족에게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다. 2008년까지 보육조세환급(child care tax rebate)이던 것을 보육료 환급으로 개칭하고 가족지원의 범주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제한이 없으므로 보육급여 소득한도액 이상의 가구라 보육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족도 보육료 환급은 받을 수 있다.

보육료 환급을 받기 위한 자격은 보육급여 지원 대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모나 보호



자가 직장, 직업훈련, 학습 테스트를 충족할 경우 등이다. 보육급여 대상 어린이집 이용자에만 허용되므로 등록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금액은 부모가 인가보육서비스에 실제로 지불한 실제 비용의 50%인데, 상한선을 두고 있다. 2012~2013년 기준으로 연간 상한액은 아동당 7,500달러이다.

지급방법은 네 가지이다. 2주마다 보육급여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2주마다 은행계좌로 지급, 분기별로 은행계좌로 지급, 연 1회 은행계좌로 지급 등이다.

### 3. 서비스 평가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제정된 법에 의거하여 2012년부터 전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전국 양질 교육 및 보육 기본안(National Quality Framework)을 시행하고 교육·보육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더욱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질 관리 체계는 기관의 평가뿐만이 아닌 교사의 자격 요건과 교사 대 아동 비율,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새로운 국가 기관의 설립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질적 수준 관리 체계의 개선이다.

보육·교육서비스 평가제도는 종전의 국립보육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에서 실시하던 보육서비스 평가인증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평가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었으며, 담당기관을 국가 조직에 포함하여 위상을 강화하였고, 주 정부에도 조직을 두게 되었다.<sup>6)</sup> 또한 국가 기관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국가 수준의 질적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은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에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물리적 환경, 직원 사항,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 등 7가지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평가도 각 서비스를 일곱 가지 질적 영역 평가를 통해 하나의 총괄적인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평가 과정을 거쳐 매겨진 영역별 및 총괄적 등급은 부모에게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된다.

6) 종전 평가인증기구는 국가기구가 아니고,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었음.

각 서비스의 등급은 최우수(excellent), 국가기준 초과(exceeding national quality standard), 국가 기준 충족(meeting national quality standard), 노력 중(working toward national quality standard), 개선 필요(significant improvement required)의 5단계로 나누어진다.

각 시설의 평가결과인 전체 등급은 영역별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각 등급별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주기

구 분	내 용
최우수 (excellent)	- 신청에 의하여 평가당국에서 선정 - 3년간 유효
국가기준 초과	- 4영역 이상이 국가기준 초과 - 3년마다 평가
국가기준 충족	- 일부 영역 국가기준 초과 - 2년마다 평가
국가기준 도달 노력	- 한 영역 이상이 국가기준 도달 노력 평가를 받은 경우 - 1년마다 평가
현저한 개선 필요	- 한 영역 이상이 현저한 개선 필요 평가를 받은 경우 - 개선계획 및 수시점검, 개선 미비 시 폐쇄조치 가능

출처: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Authority(2013).  
<http://acecqa.gov.au/national-quality-framework/assessment-and-ratings/>

우선, 현저한 개선 평가 등급은 7개 영역 중 이러한 평가를 받은 영역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국가기준 도달 노력은 이러한 평가를 받은 영역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국가기준 초과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과 시행 영역을 포함한 4개 이상 영역에서 국가기준 초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1등급인 최우수는 신청에 의하여 당국에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주기가 달라지는데, 최우수와 국가기준 초과는 3년마다, 국가기준 충족은 2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노력 중 평가를 받은 시설은 1년 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 5등급인 현저한 개선 필요 평가를 받은 시설은 개선계획과 함께 수시로 방문점검을 받게 되며, 개선 정도에 따라 처벌/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 IV. 맺는 말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되어 있고, 민간부분이 우위인 공급 구조로 보육 서비스의 질이 국가적 당면과제가 되었던 국가로, 평가인증과 재정 지원 연계를 통하여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 도입시 호주의 제도는 중요한 참고 대상이었다.

호주는 2012년 보육과 유아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법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인증제도를 평가제도로 전환하여 서비스 질적 수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무상보육 등으로 크게 증가한 재정 투자의 효과성 담보가 요구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참고문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Authority(2013), [acecqa.gov.au/national-quality-framework/assessment-and-ratings/](http://acecqa.gov.au/national-quality-framework/assessment-and-ratings/).

[www.mychild.gov.au/pages/CCFactSheets.aspx](http://www.mychild.gov.au/pages/CCFactSheets.aspx).